< 2018년 교수회 임원 및 평의원 동계 워크샵 회의록 >

❍ 일　자 : 2019. 1. 15.(화) ~ 1. 16.(수)

❍ 장　소 : 구미금오산호텔

❍ 참석자 : 박노진, 이용환, 한수식, 최낙렬, 박중윤, 박준영, 최성대, 박원우, 한규필, 김상호, 김석환

❍ 토의주제

1) 승진 및 재임용 규정 검토
2) 교수회 평의원 인원수 조정
3) 총장 선출 방법 변경

❒ 주제 선정 배경

1. 승진 및 재임용 규정 검토

- 금오공과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중 승진 및 재임용 요건의 대폭적인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대상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
- 기 조사된 학과 의견의 반영 여부 확인과 요건 강화에 대한 대학 본부의 취지 확인 필요
- 적용 대상 교수들의 의견 청취 필요

2. 교수회 평의원 인원수 조정

- 교수 수의 증가로 인하여 평의원의 인원수 조정에 대한 필요성 대두됨

3. 총장 선출 방식 변경

- 직선제 총장 선출 방식이 허용된 상황에서 총장 선출 방식의 변경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

❐ 토의 결과

1. 승진 및 재임용 규정 검토

- 조교수 4분이 참석하여 개정 예정인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함
- 교무처장이 참석하여 규정개정에 대한 대학 본부의 취지를 설명함
- 승진 및 재임용 규정 개정에 대한 대학 본부의 설명
  · 대학 본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산학 협력보다는 연구 역량 강화에 있음
  · 대학 본부의 승진 및 재임용 요건 강화 배경은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에 있으며 재임용 및 승진 임용 요건을 국립대학교의 평균 수준 정도에 해당하도록 선정함
  · 개정 내용에 대한 학과의 요구 사항중 대학 본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만 반영함
- 금오 공대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
- 학교에서 생산되는 SCI 논문수 만이 학교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것인지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에 의문이 들며 이에 대한 부담을 신임 교수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가혹함
- 학문 분야별로 논문 실적이 나오기 어려운 분야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음
- 신임 교수들이 학과 활동과 학과 및 학교 사업 그리고 교육등에 참여해줄 것을 요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승진 및 재임용 요건이 강화되어 있음.
- 승진 및 재임용의 강화에 따른 조교수 및 부교수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년 교수들의 업무 분담 노력이 필요함
- 개정 예정인 승진 및 재임용 요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개정 예정인 요건을 현재의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해보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함
- 제 21조 6항의 우수논문에 대한 주저자 인정환산율 가중치 부여 기준을 상위 25% 까지 논문에 부여하는 것을 상위 50% 까지로 변경할 필요 있음
- 승진 및 재임용 요건에서 요구하는 SCI 주저자 편수가 지나치게 과도함, SCI 주저자 편수를 각각 1편씩 감하거나 산학실적을 SCI 주저자 1편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
- 채용형 산학협력 중점 교수의 경우 당초의 채용 취지에 맞게 연구에 대한 요건을

제외하고 산학 협력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.

- 별지 제7호 서식 재임용 교원 임용심사 평가기준과 와 별지 서식 제 9호 정년임용 교원 임용심사 평가기준의 내용 수정
  - · 제10조 6항 1조와 제 12조 6항 1조에 따르면 재임용과 정년임용의 정량평가 항목의 전체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재임용 또는 정년임용이 될 수 없음.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 9호 서식의 임용심사 평가기준의 강의 평가에서 미를 받을 경우 80점 미만으로 정량 평가를 받게되어 재임용이나 정년임용이 불가함.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
  - · 부서 심사 항목의 교육자로서의 자질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서 미제출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. 미제출에 대하여서는 평가 점수 환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미제출에 대한 보완 필요
- 제 21조 2항의 산학협력실적의 인정에 있어서 학교의 연구 역량 만큼이나 산학협력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학 협력 실적의 인정 비율을 30%에서 40%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. 채용형 산학 중점 교수의 경우 당초의 제도 설립 취지에 따라 인정 비율을 60%에서 100%로 대체 가능하도록 할 필요있음.
- 별표 1-1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직급설정 기준에서 타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이직하는 경우 승진 또는 동일 직급으로 임용되기 위하여서는 본교의 승진 임용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할 필요 있음.

2. 교수회 평의원 인원수 조정

- 2그룹과 4그룹의 인원을 각각 1인씩 추가하여 2그룹 5인, 4그룹 4인으로 총 16인으로 교수회 평의원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을 3월 정기총회에서 추진하기로 함

3. 총장 선출 방식 변경

-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 확인 필요
- 3월 정기총회에서 교수들의 의견 수렴하기로 함